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8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이광희·박수현·강준현

김 윤 • 박해철 • 신정훈

김영호 · 임미애 · 박지원

김민석 • 이병진 • 박홍근

장종태 • 박용갑 • 김종민

차지호 • 이기헌 • 허성무

김영화 · 박희승 · 박정현

민형배 • 이상식 • 안규백

박선원 • 모경종 • 홍기원

의원(27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,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.

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선임권자 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) 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 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보좌관·선 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등을 선임권 자에게 인계한 때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
	수 지급) ① 선임권자는 회계
	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
	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
	<u>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</u>
	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
	<u>국회의원의 보좌관·선임비서</u>
	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
	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
	<u>하지 아니하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
	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
	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
	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
	부등을 선임권자에게 인계한
	때까지로 한다.